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 관련 업무 추가〉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74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4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3. 10.

(3) 회 부 일 : 2025. 3.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3호).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행 업무 중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에 ‘장애아동학대’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가 ‘장애인학대’와 구분·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장애인학대</u>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u>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u> (장애아동에 대하여 행하여진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장애인학대</u>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u>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② -----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2. (생략) 3. <u>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u> 4. ~ 6. (생략) ③ ~ ⑤ (생략)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u>-----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는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예방 관련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적용 법률에 따라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구별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관련 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및 제22조제6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 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u>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u>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u>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u>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항에 따른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u>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u>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u>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u>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u> -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그런데 ‘장애아동학대’의 경우는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예방 관련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실무상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전 연령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²⁾

아동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실태조사, 학대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지침 등에서 장애아동학대와 그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행 업무 중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중앙)와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중앙 및 지역)에 ‘장애아동학대’를 ‘장애인학대’와 구분하여 명시함으로,

1) 「장애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장애아동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 중 등록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 장애인거주시설(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양 기관에서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 및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양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실무상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각각 장애아동학대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관련 업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될 경우, 기관의 인력·예산·역량을 고려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어느 정도 업무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예산과 전문인력 증원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기준 예산 약 280억 원, 종사자 수는 193명에 이르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예산 약 5억 원, 종사자는 6명(기관장 1인 포함)에 불과한 수준임(참고자료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현황).

- 아울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행일(공포 후 3개월) 조정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853호, 2025.4.15.)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아동학대예방·장애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연차 보고서의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를 ‘아동학대·장애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는 아동-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 학대를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아동 학대 대응은 ‘장애’와 ‘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각각 필요로 하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각 대응체계 간 상호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비 사업 예산 및 종사자 수가 매우 부족하여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법 개정의 취지는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나, 실제 개정 조항은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및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업무만을 부여함.

따라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예방/실태조사/홍보/교육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여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원화되는 구조가 될 것임.

이에 장애아동 통합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1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의 정도 및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 및 예산의 선(先)확보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현황〉

2025년 3월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기관명	개소일	종사자 인원	예산(국비)
아동권리보장원	2019. 7.16.	193	28,03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2.27.	6	502.8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1. 1.	15	132.1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12.	7	132.1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7	132.1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8.24.	8	132.1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17.	7	132.1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8.31.	5	132.1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1.23.	7	132.1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22.	5	132.1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15	132.1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1. 1.	11	132.1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7	132.1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1.22.	6	132.1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2. 9.	5	132.1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 1.	8	132.1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 6.	7	132.1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4.	11	132.1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21.	6	132.1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9.27.	9	132.1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3.14.	6	132.1

주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10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50%, 지방비(광역시도)50%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주2): 지역별로 종사자 현원이 상이한 이유는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의 자체예산 지원으로 상담조사 인력(상담원)을 추가 채용했기 때문임.

주3):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

자료: 보건복지부